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62
----------	-------

발의연월일 : 2025. 8. 4.

발 의 자 : 송석준 · 조배숙 · 곽규택
조경태 · 김선교 · 고동진
김성원 · 김미애 · 유상범
박정하 · 장동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대법원은 기업경영인이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한 행위가 회사에게 손해를 발생시켜도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그런데 최근 「상법」상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도입함에 따라 이 제는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경영진은 배임죄로 처벌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이는 기업 경영을 극도로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 「상법」은 회사 임원진의 합리적 경영상 판단도 특별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구성요건이 동일하다는 점 등 중복입법과 이중처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새로 도입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발맞추어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회사 및 주

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배임죄로 의율하지 않고, 특별배임죄를 삭제하는 등 중복된 법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로 도입된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발맞추어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형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또는 특가법상 배임죄로 처벌하지 아니함(안 제382조의3제3항 신설).

나.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중복되고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까지 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하는 특별배임죄를 삭제하여 법 조항을 정비함(안 제622조, 제623조, 제624조 삭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2조의3의 제목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이사의 충실의무 및 배임죄 적용제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제1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및 주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형법」 제355조제2항 및 제356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배임 또는 업무상 배임의 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622조부터 제6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및 배임죄 적용제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제1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및 주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형법」 제355조제2항 및 제356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배임 또는 업무상 배임의 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u> <u><삭 제></u>
第622條(發起人, 理事 其他의 任員等의 特別背任罪) ① 會社の 發起人, 業務執行社員, 이사, 집행임원, 監査委員會 委員, 監事 또는 第386條第2項, 第407條第1項, 第415條 또는 第567條의 職務代行者, 支配人 其他 會社營業에 關한 어느 種類 또는 特定한 事項의 委任을 받은 使用	

<u>人이 그 任務에 違背한 行爲로써 財産上의 利益을 取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하여 會社에 損害를 加한 때에는 10年以下の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 <u>② 會社の 清算人 또는 第542條第2項의 職務代行者, 第175條의 設立委員이 第1項의 行爲를 한 때에도 第1項과 같다.</u> <u>第623條(社債權者集會의 代表者等의 特別背任罪) 社債權者集會의 代表者 또는 그 決議를 執行하는 者가 그 任務에 違背한 行爲로써 財産上의 利益을 取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하여 社債權者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7年以下の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 <u>第624條(特別背任罪의 未遂) 前2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u>	<u><삭 제></u> <u><삭 제></u>
---	---